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 교육 인력·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